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5. 14 선고 2019가합530891 판결 [계약보증금청구]

전 문

원 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엘

담당변호사 김상규

피 고 B공제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노만경, 배시웅

변 론 종 결 2021. 4. 23.

판 결 선 고 2021. 5. 14.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31,227,9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26.부터 2021. 5. 14.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851,385,571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1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11. 22.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에 인천 송도 D아파트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1BLOCK)(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기간 2016. 11. 22.부터 2019. 7. 31.까지, 공사대금 22,065,838,42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에 하도급하였다(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나. C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2016. 11. 28. 피고와 보증금액 2,206,583,842원, 보증기간 2016. 11. 22.부터 2019. 7. 31.까지로 정하여 계약이행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행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계약이행보증에 따른 계약보증서를 발급받아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다. 이 사건 계약이행보증계약에 적용되는 계약보증약관(이하 '이 사건 약관'이라 한다)에 의하면 보증계약은 보증채권자가 보증서를 수령한 때로부터 성립하고(제2조 제1항),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보증채권자가 보증기간 내에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것을 보증사고로 한다(제3조 제1항). 또한 그 보상범위는 보증금액 내에서 보증사고로 인하여 보증채권자가 입은 실제손해액으로 하고 채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한 나머지 계약을 이행하는데 소요되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증가된 금액도 실제손해액에 포함되며(제6조 제1, 2항), 피고는 보증금 청구문서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여 보증금을 지급하여야 한다(제7조 제1항).

라. C는 2017. 4. 26.경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였고, 2017. 5. 8. 최종 부도처리되었다. 원고는 2017. 5. 17. C에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과 이 사건 하도급계약 해지로 인한 타절정산금 5,081,987,840원이 모두 지급되었다는 내용이 기재된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위

내용증명우편은 그 무렵 C에 도달하였다.

마. 원고는 2018. 4. 20. 피고에게 심사자료를 첨부하여 계약이행보증금 620,176,039원의 지급을 청구하는 보험금 청구공문을 보냈고, 위 공문은 2018. 4. 26.경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인정사실

C가 피고와 보증기간을 2019. 7. 31.까지, 총 보증금액을 2,206,583,842원으로 하는 이 사건 계약이행보증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가 C의 공사 중단 및 부도처리를 이유로 2017. 5. 17. C에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공사대금은 22,065,838,420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리고 감정인의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가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한 2017. 4. 26.까지의 기성률은 24.03%이고, 기성고에 따른 공사비는 5,302,145,491원인 사실, 원고는 2017. 4. 26. 후속업체인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에 이 사건 공사의 잔여 부분을 공사대금 17,615,078,500원에 하도급하였고, 이후 원고는 E에 위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관련 법리

당초의 시공 회사가 공사를 중단함으로 인하여 도급인이 그 미시공 부분에 대하여 비용을 들여 다른 방법으로 공사를 시행할 수밖에 없고 그 비용이 당초 시공 회사와 약정한 공사대금보다 증가되는 경우라면 증가된 공사비용 중 합리적인 범위 내의 비용은 시공 회사의 공사도급계약위반으로 인한 손해라고 할 것이고, 당초의 시공 회사가 공사를 중단하여 도급인이 제3의 시공자로 하여금 같은 규모의 공사를 하게 하였으나 그 비용이 당초의 시공 회사와 약정한 공사대금보다 증가하게 되어 도급인의 자금사정상 부득이 공사 규모를 축소하게 됨으로써 건축하지 못하게 된 부분에 관한

공사비용 중 합리적인 범위 내의 비용도 시공 회사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라고 볼 수 있을 것이지만, 당초의 도급계약에서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물가변동 등의 사유가 있으면 처음에 정하여진 공사대금의 증액이 예정되어 있어서 비록 수급인의 귀책사유 때문에 공사가 중단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공사 중단과는 무관하게 물가변동으로 인한 공사대금의 증액사유가 발생하여 도급인으로서 어차피 당초 약정된 공사대금을 증액 지급할 것을 회피할 수 없었던 경우라면, 그러한 공사대금의 증액으로 인하여 도급인에게 추가적인 경제적인 부담이 초래되었다고 하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가리켜 수급인의 귀책사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0다31885 판결 참조).

3) 손해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C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 사건 하도급계약상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 이 사건 계약이행보증기간 내인 2017. 5. 17. 해지됨으로써 이 사건 계약이행보증계약에서 정한 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상 잔여공사 부분에 대한 공사대금 16,763,692,929원(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공사대금 22,065,838,420원 - C의 기성고에 따른 공사비 5,302,145,491원)보다 증가된 17,615,078,500원을 후속공사대금으로 지출함으로써 851,385,571원(17,615,078,500원 - 16,763,692,929원)의 손해를 입게 되었다.

4) 합리적인 범위 내의 손해인지 여부에 관하여

원고는 위 851,385,571원의 손해는 증가된 공사비용 중 합리적인 범위 내의 비용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피고는, 감정인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기성고에 따라 산출된 이 사건 공사의 잔여공사비 16,763,692,929원보다 오히려 더 적은 16,043,730,982원이 적정공사비이므로, 원고가 후속업체인 E과 체결한 계약금액을 기초로 구하고 있는 위 851,385,571원의 손해는 합리적인 범위 내의 손해라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위 인정사실,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위 851,385,571원의 손해는 증가된 공사비용 중 합리적인 범위 내의 비용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위 손해가 합리적인 범위 내의 손해라고 볼 수 없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다음과 같은 이유로 감정인 산정의 '적정공사비'는 손해액의 기준이 될 수 없다.

㉠ 원고의 감정신청서에 의하면, 원고의 감정사항 제2항은 'C 대비 E의 잔여공사에 대한 공사비 증액금액 및 증가내역'이다. 이에 대해 감정인이 원고에게 구체적인 감정사항의 설명을 요구하자 원고는 '원고와 C의 기성금 산정 후 미시공분에 대해 후속업체 E와 도급계약을 하는 적정한 공사금액의 산출을 요청한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하였고, 이에 감정인은 '적정공사비는 주관적인 판단사항에 해당되어 그 금액의 산출이 불가능하나, 이 사건 공사 중 잔여공사 품목에 대해 후속업체 선정 당시 다수의 업체로부터 제출받은 견적서의 단가를 비교하여 각 품목별 평균단가를 그 객관적인 적정공사비의 근거로 삼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원고와 피고가 이에 동의하였다. 그에 따라 감정인은 후속업체 선정 당시 다수의 업체로부터 제출받은 견적서상 각 품목별 평균단가를 기초로 적정공사비를 16,043,730,982원으로 산정하였다.

㉡ 위와 같은 최초 원고의 감정신청사항 및 이 사건 감정의 경과, 감정인이 제시한 최종적인 감정결과 등을 종합해 보면, 감정인은 후속업체 선정 당시 다수의 업체로부터 제출받은 견적서상 각 품목별 평균단가를 근거자료로 미시공 부분 잔여공사비를 산정한 것으로 보일 뿐, 이 사건 공사의 잔여공사에 대한 적정공사비가 위 16,043,730,982원이라는 의견을 단정적으로 제시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 또한 원고가 후속업체와 공사대금 17,615,078,500원에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원고와 피고가 '후속업체 선정 당시 다수의 업체로부터 제출받은 견적서상 각 품목별 평균단가'를 기초로 감정인이 산출한 후속공사비를 적정공사대금으로 간주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② 원고가 후속업체와 공사대금 17,615,078,500원에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은, 감정인이 산정한 이 사건 공사의 잔여 부분에 대한 공사대금(기존의 이 사건 하도급계약 기준) 16,763,692,929원을 기준으로 약 5% 증액된 것에 불과하다. 또한 위 17,615,078,500원은 감정인이 산정한 미시공 부분에 소요될 공사비 28,635,686,356원과 비교하더라도 상당히 적은 액수이다.

③ 원고는 이 사건 공사의 잔여공사에 관하여 복수의 업체를 대상으로 입찰 절차를 진행하여 최저 가격 입찰자인 E를 후속공정업체로 선정하였다. 그런데 최초 공사를 수행하던 업체의 부도 등으로 공사가 중단된 후 공사를 이어 받는 후속업체가 종전 공사를 진행하던 업체의 남은 공사 물량에

대하여 공사금액을 증액하여 입찰하고 공사를 진행한 것이 이례적인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

④ 원고가 잔여공사 부분에 관하여 E과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에, 기존의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포함되지 않은 부분이 추가되거나 설계가 변경됨으로써 공사비가 증가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발주 시 일부 품목이 제외되거나 부가된 사정은 있는 것으로 보이나 발주 제외 분 금액이 더 많고, 발주 제외 품목과 추가 품목 모두 발주액에서 제외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공사 중단과는 무관하게 물가변동으로 인한 공사대금의 증액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4) 소결론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이행보증금으로 851,385,57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주장

피고는, 원고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13조의2 제1, 5, 10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C에 하도급대금 지급을 보증하고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교부하지 않은 이상 이 사건 계약이행보증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하도급법 제13조의2 제1항은 건설위탁의 경우 원사업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하고,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계약이행을 보증하도록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10항에서 제1항에 따른 수급사업자의 계약이행 보증에 대한 원사업자의 청구권은 해당 원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한 후가 아니면 이를 행사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그러나 갑 제9,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인 2016. 12. 20. F공제조합과 이 사건 공사대금에 관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계약을 체결하고, 위 지급보증계약의 지급보증서를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에 등록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하도급법상 원사업자의 공사대금 지급보증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또한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볼 때, 원사업자가 계약이행보증 청구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수급사업자에 대한 도급대금 지급보증서가 실제로 교부되는 것이 선이행조건이라거나, 지급보증서가 교부되지 않으면 수급사업자에 대한 지급보증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지 않는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하도급법 제13조의2 제5항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보증은 현금의 지급 또는 권한기관이 발행하는 보증서의 ‘교부’에 의하여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하도급법 제13조의2 제10항은 ‘원사업자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한 후가 아니면 계약이행보증에 대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하여, 보증서의 교부에 관한 제5항을 그 선이행조건에 해당하는 규정으로 직접 명시하지 않았다.

② 보증서의 교부에 관한 위 규정은 1996. 12. 30. 법률 제5324호로 신설되었는데, 위 규정 신설시 개정이유는 ‘건설공사의 원사업자의 부도나 하도급대금 미지급에 따른 수급사업자의 연쇄부도 또는 자금난의 초래, 부실공사의 유발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설공사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F공제조합이 발행하는 보증서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도록 함으로써 건설공사의 하도급대금의 지급이 보장되도록 함’이라고 밝히고 있어 ‘하도급대금에 대한 지급보증제도’ 도입에 그 주된 취지가 있었다. 이후 현재까지 위 규정은 그 조문의 위치와 자구만 일부 수정되었을 뿐 큰 변동이 없었고, 하도급법에서 특별히 ‘발급’과 ‘교부’를 구별하고 있지도 않다.

③ 보증기관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은 그 성질에 있어서 조합원 상호의 이익을 위하여 영위하는 상호보험으로서 이에 대하여는 보험의 법리가 적용되므로(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0다2450 판결 참조), 수익자인 수급사업자는 수익의 의사표시 없이도 하도급대금 지급보증계약의 이익을 직접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수급사업자에게 도급대금 지급보증서가 발급되어 유효한 지급보증계약이 성립한 이상, 그 보증서가 실제 교부되지 않더라도 수급사업자의 권리를 해칠 가능성은 크지 않다(특히 이 사건과 같이 위 지급보증계약의 지급보증서가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 등록된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2) 미지급 기성대금 공제 주장1) 피고는, C가 원고에 대하여 가지는 기성고에 따른 미지급 공사대금

채권 220,157,651원은 원고의 손해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의 손해액이 851,385,571원임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리고 감정인의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공사 중 피고의 기성고에 따른 공사대금은
5,302,145,491원인데, 원고가 이 사건 공사 중단 이후 C에 5,081,987,840원만을 정산금으로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C는 원고에 대해 220,157,651원(= 5,302,145,491원 -
5,081,987,840원)의 미지급 기성공사대금채권을 가진다. 결국 원고의 손해액 위
851,385,571원에서 위 220,157,651원이 공제되어야 하므로, 원고의 계약이행보증금채권은
631,227,920원(= 851,385,571원 - 220,157,651원)이 된다.

다. 지연손해금의 기산점에 관하여

앞서 본 이 사건 약관에 의하면, 피고는 보증금 청구문서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여
보증금을 지급하여야 한다(제7조 제1항 본문). 다만, 보증채권자의 심사자료 제출이 지연되거나
제출한 심사자료에 대해 정당한 이의가 있어 소명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 지연일수 및 소명에 소요된
일수는 제외된다(제7조 제1항 단서).

원고가 2018. 4. 20. 피고에게 심사자료를 첨부하여 계약이행보증금 620,176,039원의 지급을
청구하는 보험금 청구공문을 보냈고, 위 공문이 2018. 4. 26.경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8. 5. 2. 원고에게 보상심사자료 제출을 요청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그 밖에 달리 피고가 이 사건 약관에 따른 심사기간인
60일 이내에 원고가 제출한 심사자료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을 제1호증(C
보증금 청구에 대한 조합 의견 회신)은 피고가 위 심사기간이 경과한 후인 2018. 10. 25. 원고에게
보낸 서면일 뿐이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에게 심사자료를 첨부하여 계약이행보증금을 청구한 공문이 피고에게 도달한
2018. 4. 26.로부터 60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8. 6. 26.부터 피고가 이행지체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것이다.

라. 소결론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 이 사건 계약이행보증금으로 위 631,227,92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2018. 6. 2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5. 14.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우정, 판사 백상빈, 판사 권민영

1) 피고가 상계적상일이나 지연손해금 등에 관하여 주장하지 않고 원금의 공제만을 주장하고 있고 원고도 이에 대하여 특별히 다투지 않으므로, 공제 주장으로 보아 간략히 설시한다.